

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양 산 시 의 회 의 장

2022년 3월 7일

양산시 의회규칙 제 108 호

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

제1조(「양산시의회 회의 규칙」의 개정)

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제1항 중 “법 제86조”를 “법 제9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법 제83조제2항”을 “법 제95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7조 후단 중 “법 제86조”를 “법 제98조”로 한다.

제2조(「양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의 개정)

양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9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